

---

#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평가 매뉴얼

---

2017. 5.



## 1. 평가기관 일반현황

기관명			
소재지	(   -   )		
관할(지)청		총인원:    명 기술지도 요원 : 명	기술사 :    명
대표자			지도사 :    명
전화번호			기사 :    명
			산업기사 :    명
			기타 :    명
지정일자	최초지정일:	변경지정일:	

## 2. 평가현황

### 가. 평가일시

평가일(1차)	2017년    월    일	평가일(2차 재평가)	2017년    월    일
---------	-----------------	-------------	-----------------

### 나. 평가반

구분	소속	직책	성명	서명
평가반장				
평가반원				
평가반원				

### 다. 평가대상기관

구분	직책	성명	서명
평가대상기관(책임자)			
평가대상기관(담당자)			

### 3. 평가결과

구 분	평 가 분 야			
	운영체계		업무성과	
만 점 (1,000점)	400점	가감점	600점	가감점
점 수	점		점	

#### 3-1. 총 점수 및 등급

총 점 수	점	등 급	등급

#### 【 점수별 등급 기준표 】

S등급(최우수)	A등급(우수)	B등급(보통)	C등급(미흡)	D등급(불량)
900점 이상	800~899점	600~799점	400~599점	400점 미만

※ 점수는 가/감점을 반영한 최종 점수임

#### 4. 평가항목 분야별 총괄표

분야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배점	취득점수		
<b>합 계</b>			<b>1,000</b>			
A 운영체계	소 계		400			
	A1	운영방침 및 업무관리 체계	1.1 운영방침 및 운영표준의 수립 1.2 기술지도 업무관리 체계	30 30		
	A2	인적자원 보유 및 교육훈련 (인적기준)	2.1 전문인력 추가 확보 여부 (관련분야 자격증 및 경력 보유 수준) 2.2 지도요원 교육·훈련 실시(내·외부) 2.3 지도요원별 사업장 배분현황 2.4 지도요원의 법정장비 사용방법 숙지상태	60 60 70 50		
	A3	시설·장비 보유 및 유지관리 (물적기준)	3.1 법정장비 이외 추가 확보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 3.2 법정장비 및 추가장비 활용 실적	50 50		
	가 감 점 항 목	A.4 포상 및 행정처분 실적	4.1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관 또는 보유 인력에 대한 포상 실적(대통령:5, 장관:3, 이사장:2)	0~10		
			4.2 최근 2년 이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처분개월수별 -15점, 최대 -80점)	-80~0		
		A.5 종합화	5.1. 종합기술지원(컨소시엄 구성 포함, 동일기관 +10점, 타기관 +20점)	0~30		
	B 업무성과	소 계		600		
		B.1	사업장 관리 및 기술지도의 충실성	1.1 기술지도 결과보고서의 적정성	70	
				1.2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개선대책	70	
1.3 사업장 안전관련 기술자료 제공 및 교육지원				60		
1.4 위험성평가 인정(컨설팅)				100		
B.2		재해감소	2.1 중대재해 발생빈도 감소성과	200		
B.3		만족도 및 우수사례	3.1 지도사업장 만족도	50		
			3.2 기술지도 우수사례(정성평가)	50		
가 감 점 항 목		B.4 재해발생 및 산재은폐	4.1 기술지도 사업장의 중대재해 발생(건별 -10점, 최대 -100점)	-100~0		
			4.2 기술지도 사업장의 산재은폐(건별 -10점, 최대 -100점)	-100~0		
	4.3 재정기술지원사업 연계 및 불량사업장 신고 (1건당 +5점, 최대 +50점)		0~50			
	4.4 세미나 참석 및 전산입력 오류(건별 ±5점, 최대 ±50점)		-50~50			

※ 세부 평가항목별 평가점수를 확인함

평가자				평가대상기관(담당자)			
직책		성명	(서명)	직책		성명	(서명)

## A.운영체계

### A.1 운영방침 및 업무관리 체계

A.1.	운영방침 및 업무관리 체계(배점:60)	취득점수	
평가항목 A1.1.1	평가기준 (배점 : 30)		평가결과
운영방침 및 운영 표준의 수립	① 기술지도 기관의 연간 사업계획 및 운영계획을 문서화 하지않고 사업평가 및 환류활동을 하지않음		<input type="checkbox"/> 0
	② 기술지도 기관의 연간 사업계획 및 운영계획을 문서화 하였고, 계획에 따라 운영방침 및 목표 등이 관리되고 있음		<input type="checkbox"/> 10
	③ 기술지도 기관의 연간 사업계획 및 운영계획을 문서화 되어 계획에 따라 운영방침 및 목표 등이 관리되고 있으며 정기적(반기이하) 사업평가 및 환류활동을 실시하고 있음		<input type="checkbox"/> 20
	④ 기술지도 기관의 연간 사업계획 및 운영계획과 함께 정기적(반기이하) 사업평가 및 환류활동으로 계획 및 업무 절차의 보완 등 대책반영이 효율적임		<input type="checkbox"/> 30
평가 취지	<p>○ 소규모 건설현장의 자율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재해예방기술지도의 연간 사업계획 수립과 예방인력의 효율적 배분을 반영한 운영계획 및 기술지도 과정상에서 나타난 장애요인에 대한 정기적 환류 및 대책반영을 평가</p>		
주요 착안사항	<p>○ 사업계획서 및 운영계획 주요검토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표선정 및 기술인력의 수준에 따른 건설현장 배분계획의 적정성</li> <li>- 건설현장 중점위험요인(붕괴,도괴,화재,폭발)의 예방을 위한 기술지도 실시계획</li> <li>- 기술지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치수준 마련 및 환류계획</li> <li>- 기술지도 사항에 대한 개선여부 확인계획의 적정성</li> <li>- 고객 만족도 및 청렴의무 확보계획</li> <li>- 효율적 기술지도를 위한 기술지도 시기관리 및 적시 기술지원 계획</li> </ul> <p>○ 사업평가 및 환류활동 주요검토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기적(반기이하) 사업평가를 통한 목표달성의 관리 및 문제점 도출</li> <li>- 사업 추진과정상 목표달성 또는 도출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환류여부</li> <li>- 환류활동 결과의 대책선정 및 추진의 효율성</li> </ul>		
평가 방법	<p>○ 평균기준에 따른 배점 산출방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문서화된 사업계획 및 운영계획을 확인</li> <li>② 정기적인 사업평가 및 환류활동을 확인</li> <li>③ 정기적인 사업평가 및 환류활동의 결과로 대책선정 및 추진을 확인</li> </ol>		
증빙서류	<p>○ 사업계획 및 운영계획, 사업평가 및 환류활동 증빙서류 등</p>		

A.1.	운영방침 및 업무관리 체계(배점:60)	
평가항목 A.1.1.2	평가기준 (배점 : 30)	평가결과
기술지도 업무관리 체계	① 기술지도 기관의 지도분야, 계약, 기술지도 횟수, 기술지도 한계 및 지도지역, 범위 및 준수 의무, 기술지도 결과의 기록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의3 관련, 허위로 업무관리된 경우	□ 0
	② 기술지도 기관의 지도분야, 계약, 기술지도 횟수, 기술지도 한계 및 지도지역, 범위 및 준수 의무, 기술지도 결과의 기록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의3 관련 지도 기준의 미흡이 5건 이상인 경우	□ 10
	③ 기술지도 기관의 지도분야, 계약, 기술지도 횟수, 기술지도 한계 및 지도지역, 범위 및 준수 의무, 기술지도 결과의 기록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의3 관련 지도 기준의 미흡이 2건 이하인 경우	□ 20
	④ 기술지도 기관의 지도분야, 계약, 기술지도 횟수, 기술지도 한계 및 지도지역, 범위 및 준수 의무, 기술지도 결과의 기록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의3 관련 지도기준이 준수 되고 결과보고서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경우	□ 30
평 가 취 지		
○ 기술지도 기관이 지도분야, 계약, 기술지도 횟수, 기술지도 한계 및 지도지역, 범위 및 준수 의무, 기술지도 결과의 기록 등 산업안전법 시행규칙제32조의3 관련 지도기준 준수평가		
주요 착안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분야 적정성</li> <li>○ 산업안전법 시행규칙제32조의3 관련 별표6의5 「재해예방 전문기술지도기관의 지도기준」에 따른 인력기준 준수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금액 40억원이상 건설공사는 산업안전지도사(건설), 건설안전기술사(전기·정보통신공사는 산업안전지도사(건설,전기), 건설안전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건설안전·산업안전기사로서 건설안전 실무경력 9년 이상인 사람)가 기술지도 4회마다 기술지도 실시</li> </ul> </li> <li>○ 기술지도 한계 및 지도지역의 준수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지도 담당요원 1명당 사업장수 30개이하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금액 3억원 미만 사업장은 3개소를, 3억원~40억원 미만 사업장은 2개소를 1개소로 산정</li> </ul> </li> <li>- 기술지도 기관의 지정 고용부 청(지청)소속 관할지역 준수</li> </ul> </li> <li>○ 기술지도 범위 및 준수 의무 이행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당요원 지정시 공사의종류, 규모, 담당 사업장 수 등의 고려</li> <li>- 기술지도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산안법상 사업주 의무를 충실히 권고하였는지 확인</li> </ul> </li> <li>○ 기술지도 결과기록 및 서류보존의 충실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과보고서 작성 및 사업주 제공, 결과보고서 검토절차, 전산입력 등 결과관리 여부</li> <li>- 사업장 관리카드 작성 및 개선 요구사항의 근거(사진) 첨부 등 관리</li> <li>- 계약서, 결과보고서, 사업장 관리카드 등 기술지도 관련서류의 3년간 보존</li> </ul> </li> </ul>		
평 가 방 법		
<p>지도기준 미흡사항 건수를 확인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배점(허위관리 확인시 0점처리)</p> <p>※ 허위관리 및 미흡 지적사항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0]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위반사항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조치요청</p>		
증빙서류		
○ 계약서,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재해예방 대책마련 회의록, 사업장 관리카드 등 관련서류		

## A.2 인적자원 보유 및 교육훈련(인적 기준)

A.2	인적자원 보유 및 교육훈련(인적기준)(배점:240)	취득점수																										
평가항목 A.2.2.1	평가기준 (배점 : 60)		평가결과																									
전문인력 추가 확보 여부(관련분야 자격증 및 경력 보유 수준)	<b>가. 기술지도 전담인력 추가 확보현황</b>																											
	① 4명이하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10																									
	② 5명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15																									
	③ 6명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20																									
	④ 7~9명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25																									
	⑤ 10명 이상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30																									
	<b>나. 지도요원 자격 및 경력현황</b>																											
	① 개인별 평균 배점이 1.8점 미만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10																									
	② 개인별 평균 배점이 1.8점 이상~2점 미만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15																									
	③ 개인별 평균 배점이 2점 이상~2.2점 미만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20																									
④ 개인별 평균 배점이 2.2점 이상~2.4점 미만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25																										
⑤ 개인별 평균 배점이 2.4점 이상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30																										
평가취지	○ 재해예방기술지도의 질적 및 실효성 향상을 위해 우수한 기술지도 요원의 확보 여부를 평가																											
주요 착안사항	○ 전담인력 확보여부 확인 - 전담인력: 평가 실시일 전월기준 최근 6월간(11월 평가시 5.1~10.31) 담당사업이 없고 기술지도를 실시하지 않은 인력을 제외(영업,사무 전담직원 등)한 상근직원 다만, 최근 6개월이내 채용되어 OJT중인 직원은 포함 ○ 지도요원의 자격 및 경력 현황확인 - 인력기준과 관계없이 기술지도 전담인력에 대해 자격 및 경력을 평가																											
평가방법	○ 전담인력 여부를 확인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배점 ○ 지도요원의 자격 및 경력현황 평가 배점 - 건설안전경력: 자격취득 전 경력도 포함(기술사의 경우 건설안전(산업)기사의 경력 합산)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자 격</th> <th colspan="4">건설안전 지도경력 누적연수(1인당) 별 배점기준</th> </tr> <tr> <th>15년 이상</th> <th>10년 이상</th> <th>5년 이상</th> <th>5년 미만</th> </tr> </thead> <tbody> <tr> <td>건설분야 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td> <td>5.0</td> <td>4.4</td> <td>3.8</td> <td>3.2</td> </tr> <tr> <td>건설안전기사, 산업안전기사 또는 토목·건축기사</td> <td>3.0</td> <td>2.4</td> <td>1.8</td> <td>1.2</td> </tr> <tr> <td>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토목·건축산업기사, 기타 자격</td> <td>2.0</td> <td>1.6</td> <td>1.2</td> <td>1.0</td> </tr> </tbody> </table>				자 격	건설안전 지도경력 누적연수(1인당) 별 배점기준				15년 이상	10년 이상	5년 이상	5년 미만	건설분야 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5.0	4.4	3.8	3.2	건설안전기사, 산업안전기사 또는 토목·건축기사	3.0	2.4	1.8	1.2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토목·건축산업기사, 기타 자격	2.0	1.6	1.2	1.0
자 격	건설안전 지도경력 누적연수(1인당) 별 배점기준																											
	15년 이상	10년 이상	5년 이상	5년 미만																								
건설분야 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5.0	4.4	3.8	3.2																								
건설안전기사, 산업안전기사 또는 토목·건축기사	3.0	2.4	1.8	1.2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토목·건축산업기사, 기타 자격	2.0	1.6	1.2	1.0																								
	- 평가기간내에 관련분야 자격증(건설안전, 산업안전, 토목, 건축)추가 취득시 경력 점수반영																											
증빙서류	○ 인력보유현황, 임금지급대장, 지방청 신고현황, 담당 사업장 현황, 자격증, 경력현황(기술인 협회 경력 증명서류 등)																											

A.2	인적자원 보유 및 교육훈련(인적기준)(배점:240)	
평가항목 A.2.2.2	평가기준 (배점 : 60)	평가결과
지도요원 교육· 훈련 실시(내·외부)	법정교육 이외 직무향상을 위한 교육 이수 및 자체 교육 실적이 없음	<input type="checkbox"/> 0
	법정교육 이외 직무향상을 위한 교육 이수 및 자체 교육 실적이 개인별 평균 4시간 미만임	<input type="checkbox"/> 30
	법정교육 이외 직무향상을 위한 교육 이수 및 자체 교육 실적이 개인별 평균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임	<input type="checkbox"/> 40
	법정교육 이외 직무향상을 위한 교육 이수 및 자체 교육 실적이 개인별 평균 8시간 이상 16시간 미만임	<input type="checkbox"/> 50
	법정교육 이외 직무향상을 위한 교육 이수 및 자체 교육 실적이 개인별 평균 16시간 이상임	<input type="checkbox"/> 60
평 가 취 지	<p>○ 재해예방기술지도의 질적 향상 및 전문성 향상을 도모토록 기술지도 요원의 직무교육 등 교육·훈련 실시 여부를 평가</p>	
주요 착안사항	<p>○ 국가기술펙자력증 관련 신규·보수교육 및 직무유지를 위한 법정교육은 제외</p> <p>○ 자체교육은 강사료를 지급한 외부강사(시행규칙 제33조제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가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p>	
평 가 방 법	<p>○ 법정교육 이외 안전관련 직무향상을 위한 교육 이수 및 자체 교육 실적을 산출하여 개인별 평균시간 산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기술펙자력증 관련 신규·보수교육 및 직무유지를 위한 법정교육은 제외</li> <li>- 자체교육은 강사료를 지급한 외부강사(시행규칙 제33조제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가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li> </ul> <p>○ 산출된 개인별 교육이수 평균시간에 따라 평가기준에 의거 배점</p>	
증빙서류	<p>○ 교육 이수증 및 확인서, 교육·훈련 관련 문서 등</p>	

A.2	인적자원 보유 및 교육훈련(인적기준)(배점:240)	
평가항목 A.2.2.3	평가기준 (배점 : 70)	평가결과
지도요원별 사업장 배분현황	40억원 이상 기술지도 대상 현장을 규칙 별표 6의4에서 정하는 인력기준 제 3), 4)에 해당하는 인력이 45% 이상 담당	<input type="checkbox"/> 0
	40억원 이상 기술지도 대상 현장을 규칙 별표 6의4에서 정하는 인력기준 제 3), 4)에 해당하는 인력이 35% 이상 45% 미만 담당	<input type="checkbox"/> 30
	40억원 이상 기술지도 대상 현장을 규칙 별표 6의4에서 정하는 인력기준 제 3), 4)에 해당하는 인력이 25% 이상 35% 미만 담당	<input type="checkbox"/> 50
	40억원 이상 기술지도 대상 현장을 규칙 별표 6의4에서 정하는 인력기준 제 3), 4)에 해당하는 인력이 25% 미만 담당	<input type="checkbox"/> 70
평가 취지	<p>○ 기술지도 대상 건설현장중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40억원 이상 현장에 대해 기술지도 실효성을 확보토록 경험과 기술력이 뛰어난 기술지도 요원의 담당을 유도코자 지도요원별 사업장 배분 현황 평가</p>	
주요 착안사항	<p>○ 평가대상기간(1년간)중 기술지도 요원별 사업장 배분을 분석·평가</p>	
평가 방법	<p>○ 기술지도 요원중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6의4에서 정하는 인력기준 제3)*, 4)**에 해당하는 인력이 공사금액 40억원이상 현장을 얼마나 담당하는지 백분율로 산출  - 지도요원별 사업장 배분율= (제3), 4)*에 해당하는 인력이 공사금액 40억원이상 현장에 대한 지도 회수/1년간 40억원이상 현장에 대한 지도 회수)*100  *3): 가)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실무경력 3년(기사는1년)이상인 사람  나)토목·건축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실무경력 3년(기사는1년)이상이고 영14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춘 사람  **4): 영14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춘 사람(8~13호 제외)으로서 건설안전실무 경력 2년이상인 사람</p>	
증빙서류	<p>○ 인력보유현황, 담당 사업장 현황,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사업장 관리카드 등 관련서류</p>	

A.2	인적자원 보유 및 교육훈련(인적기준)(배점:240)	
평가항목 A.2.2.4	평가기준 (배점 : 50)	평가결과
지도요원의 법정장비 사용방법 숙지상태	법정 장비 활용법을 숙지 못하는 지도요원이 3명 이상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0
	법정 장비 활용법을 숙지 못하는 지도요원이 1~2명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25
	모든 지도요원이 법정 장비 활용법을 숙지하고 있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50
<p>평 가 취 지</p> <p>○ 법정장비의 활용을 통한 기술지도의 질적 향상 및 예방효과 극대화를 위해 기술지도 요원의 장비활용 능력을 평가</p>		
<p>주요 착안사항</p> <p>○ 법정장비 정상작동 및 활용여부 확인  ○ 법정장비의 사용실태 및 기록 유지·관리 상태 확인  ○ 법정장비별 사용 매뉴얼 작성여부 및 사용방법 교육여부 확인  ○ 장비 사용방법 확인시 독립된 공간에서 지도요원별 각각 사용방법 숙지여부 확인</p>		
<p>평 가 방 법</p> <p>○ 기술지도 기관별 지도요원 5명이상 무작위 추출하여 법정장비(7개종류)별 올바른 사용방법 숙지여부 확인  - 기술지도 요원이 상근하는 장소와 분리된 독립공간에서 지도요원별 각각 사용방법 확인  - 법정장비: 가스농도 측정기, 산소농도 측정기, 고압경보기, 검전기, 조도계, 접지저항 측정기, 절연저항측정기  ○ 기술지도 요원별 법정장비(7개종류)중 단 한 개종류라도 사용방법이 올바르지 않거나 미숙지 상태인 경우 숙지 못하는 경우로 판정  - 사용방법이 올바르지 않거나 미숙지 상태인 기술지도 요원의 숫자를 파악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배점</p>		
<p>증빙서류</p> <p>○ 장비 보유 및 사용현황, 담당 사업장 현황,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사업장 관리카드 등 관련서류</p>		

### A.3 시설·장비 보유 및 유지관리(물적 기준)

A.3	인적자원 보유 및 교육훈련(인적기준)(배점:100)	취득점수	
평가항목 A.3.3.1	평가기준 (배점 : 50)		평가결과
법정장비 이외 추가확보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	가. 법정장비 이외 추가 확보장비 보유(20점)		
	나. 보유장비의 유지·관리 상태의 적정성		
	보유장비 중 정상작동이 되지 않는 장비가 있거나 검·교정을 30% 미만 실시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0
	보유장비가 모두 정상작동이 되고 검·교정을 30% 이상 실시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10
	보유장비가 모두 정상작동이 되고 검·교정을 70% 이상 실시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20
	보유장비가 모두 정상작동이 되고 검·교정을 모두 실시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30
평가취지			
<p>○ 재해예방기술지도의 질적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법정장비 이상 장비의 확보를 담보코자 법정장비 이외 추가장비 보유여부와 장비 정상작동 등 유지관리 상태의 최신성을 평가</p>			
주요 착안사항			
<p>○ 법정장비가 기술요원 수에 비례하여 법정수량 이상 확보여부 확인          ○ 법정장비 이외 추가장비 보유여부는 법정장비의 법정수량이상 확보도 포함          ○ 법정장비의 정상작동 등 유지관리 상태 및 검·교정 여부 확인</p>			
평가방법			
<p>○ 법정장비 이외 추가장비 보유 점수산식: 상한 20점이내에서 산식에 따른 점수배점</p> $20점 \times \left( \frac{\text{지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수}(set)}{\text{지도기관 등록기준 장비수}(set)} - 1 \right)$ <p>○ 법정장비의 정상작동 등 유지관리 상태 및 검·교정 여부에 따라 평가기준에 의거 배점</p>			
증빙서류			
<p>○ 법정장비이외 추가장비 보유현황, 장비이력카드 및 사용대장, 장비관리지침, 검·교정 확인서류 등</p>			

A.3	인적자원 보유 및 교육훈련(인적기준)(배점:100)	
평가항목 A.3.3.2	평가기준 (배점 : 50)	평가결과
법정장비 및 추가 장비 활용실적	법정 장비 및 추가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나 허위로 사용실적을 작성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0
	지도사업장 수(매월 말일 기준) 대비 법정 장비 및 추가장비 사용 현장수가 10% 미만(10개월 평균)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25
	지도사업장 수(매월 말일 기준) 대비 법정 장비 및 추가장비 사용 현장수가 10% 이상(10개월 평균)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50
평 가 취 지	<p>○ 법정장비 및 추가장비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재해예방기술지도의 질적 및 전문성 향상을 도모코자 장비의 활용실적을 평가</p>	
주요 착안사항	<p>○ 법정장비의 사용여부 판단은 장비 사용장소, 측정결과를 기술지도 결과보고서에 기재하여 사용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p> <p>○ 법정장비 또는 추가장비 사용실적의 허위기재 여부 확인 철저</p>	
평 가 방 법	<p>○ 기술지도 요원별 5개현장을 무작위 추출하여 지도 사업장수(매월 말일기준) 대비 법정장비 및 추가장비 사용 현장수 비율(10개월 평균) 산정</p> <p>- 장비 활용실적표와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내용을 대조·확인</p> <p>- 지도 사업장수(매월 말일기준) 대비 법정장비 및 추가장비 사용 현장수 비율에 따라 평가기준 해당배점 부여</p>	
증빙서류	<p>○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법정장비 활용 실적표, 추가장비 보유현황, 장비이력카드 및 사용 대장 등</p>	

## A.4 포상 및 행정처분 실적(가감점 항목)

A.4	포상 및 행정처분 실적	취득점수	
평가항목 A.4.4.1	평가기준 (배점 : 가점 10)		평가결과
최근 2년 이내 산업 안전보건 관련기관 또는 보유 인력에 대한 포상실적(대통령5 장관3 이사장2)	대통령포상		□ 5
	장관포상		□ 3
	이사장 포상		□ 2
평가항목 A.4.4.2	평가기준 (배점 : 감점 -15~-80)		평가결과
최근 2년 이내 업무 정지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처분개월수별 -15점 최대 -80점)	최근 2년 이내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처분개월수별 -15점, 최대 -80점 부여( -15×처분 개월수)		
	최근 2년 이내 시정조치·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시정조치·경고처분 건수× -2점(최대 -20점)		
<p>평 가 취 지</p> <p>○ 재해예방기술지도기관 및 보유인력에 대해 포상 실적 또는 행정처분을 평가에 반영</p>			
<p>주요 착안사항</p> <p>○ 가점: 대통령 포상, 고용노동부장관 포상, 공단 이사장 포상 사실 확인</p> <p>○ 감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2년 이내 업무정지 처분사실 확인</li> <li>- 최근 2년 이내 시정조치·경고처분 사실확인</li> </ul>			
<p>평 가 방 법</p> <p>○ 가점: 대통령 포상 : +5점, 고용노동부장관 포상 : +3점, 공단 이사장 포상 : +2점</p> <p>○ 감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2년 이내 업무정지 처분사실 확인( -15×처분 개월수(최대 -80점))</li> <li>- 최근 2년 이내 시정조치·경고처분 사실확인(-2점×시정조치·경고처분 건수(최대 -20점))</li> </ul> <p>○ 표창장, 업무정지, 시정조치, 경고처분 관련문서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서 확인이 불가할 경우 고용노동부 확인요청, 공단 전산망의 사업장 정보조회로 확인</li> </ul>			
<p>증빙서류</p> <p>○ 표창장, 업무정지, 시정조치, 경고처분 관련문서등</p>			

## A.5 종합화(가감점 항목)

A.5	종합화	취득점수	
평가항목 A.5.5.1	평가기준 (배점 : 가점 10~20)		평가결과
종합기술지원 (컨소시엄 구성 포함, 동일기관+10, 타기관 +20점)	재해예방기술지도기관 소속조직(동일기관)과의 종합기술지원시	<input type="checkbox"/> 10	
	타기관과의 협업으로 종합기술지원시	<input type="checkbox"/> 20	
평가취지	<p>○ 기술지도의 수준향상 및 상향 평준화를 위해 동일 재해예방 기술지도기관내 타 조직 및 타기관과의 종합기술지원 등 협업 촉진활동을 평가</p>		
주요 착안사항	<p>○ 기술지도의 수준향상 및 상향 평준화를 위한 컨소시엄 구성여부 확인 ○ 기술지도의 수준향상 및 상향 평준화를 위해 타기관과의 협업여부 확인</p>		
평가방법	<p>○ 기술지도의 수준향상 및 상향 평준화를 위한 컨소시엄 구성 또는 동일 재해예방 기술지도기관내 타 조직과의 종합기술지원 여부가 확인될 경우 가점 +10점부여 ○ 기술지도의 수준향상 및 상향 평준화를 위한 타 기관과의 협업여부가 확인될 경우 가점 +20점부여 ○ 구두상 교류가 아닌 상호 업무협조를 증명하는 공문이나 협약서 작성 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점 인정 ○ 종합기술지원 실시 - 소속조직(동일기관) 실시: 반기 1회(5점), 반기 2회 이상(10점) - 타기관 협업실시: 반기 1회(10점), 반기 2회 이상(20점)</p>		
증빙서류	<p>○ 업무협조를 증명하는 공문 또는 협약서, 관련 근거서류</p>		

## B.업무성과

### B.1 사업장 관리 및 기술지도의 충실성

B.1	사업장 관리 및 기술지도의 충실성(배점:300점)	취득점수	
평가항목 B.1.1.1	평가기준 (배점 : 70)		평가결과
기술지도 결과보고서의 적정성	① 작성한 결과보고서의 30% 이상을 고용부에서 권고한 양식 사용		<input type="checkbox"/> 10
	② 작성한 결과보고서의 50% 이상을 고용부에서 권고한 양식 사용		<input type="checkbox"/> 30
	③ 작성한 결과보고서의 70% 이상을 고용부에서 권고한 양식 사용		<input type="checkbox"/> 50
	④ 모든 결과보고서를 고용부에서 권고한 양식으로 사용		<input type="checkbox"/> 70
평가 취지	<p>○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별로 상이한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표준화하기 위한 평가</p>		
주요 착안사항	<p>○ 아래 항목이 포함된 표준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사용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 사업장 개요</li> <li>- ② 기술지도 개요</li> <li>- ③ 기술지도 방문시 재해예방 대책</li> <li>- ④ 다음 방문시 재해예방 대책</li> <li>- ⑤ 사업장 지원현황</li> <li>- ⑥ 지난 기술지도시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li> </ul>		
평가 방법	<p>○ K2B 전산에 입력한 결과보고서 또는 별도 편철된 결과보고서 확인</p> <p>○ 검토대상 보고서는 지도요원별 5개 현장 파일을 샘플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식 사용 비율= ( 전체 표준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사용회수/전체 기술지원 회수)*100</li> </ul> <p>○ 2017년 5월 20일부터 사용한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기준으로 함</p>		
증빙서류	<p>○ 고용노동부 권고사항이 반영된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양식</p>		

B.1	사업장 관리 및 기술지도의 충실성(배점:300점)	
평가항목 B.1.1.2	평가기준 (배점 : 70)	평가결과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개선대책	① 유해위험 요인별 지도내용의 미흡한 비율이 샘플링 대비 35% 이상 50% 미만인 경우	□ 10
	② 유해위험 요인별 지도내용의 미흡한 비율이 샘플링 대비 20% 이상 35% 미만인 경우	□ 30
	③ 유해위험 요인별 지도내용의 미흡한 비율이 샘플링 대비 10% 이상 20% 미만인 경우	□ 50
	④ 유해위험 요인별 지도내용의 미흡한 비율이 샘플링 대비 10% 미만인 경우	□ 70
평가 취지	<p>○ 기술지도 현장에 대하여 유해위험 요인별로 지도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개선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제거에 기여하기 위한 평가</p>	
주요 착안사항	<p>○ 유해위험 요인에 대하여 기술지도시 장소(위치), 지적사항, 개선대책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야 함</p>	
평가 방법	<p>○ K2B 전산에 입력한 결과보고서 또는 별도 편철된 결과보고서 확인</p> <p>○ 기술지원시 유해위험 요인에 대하여 한 것이라도 지도내용이 미흡할 경우에는 미흡으로 처리</p> <p>○ 검토대상 보고서는 지도요원별 5개 현장 파일을 샘플링</p> <p>- 미흡 비율= ( 전체 미흡 기술지원 회수/전체 기술지원 회수)*100</p>	
증빙서류	<p>○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사업장 관리 카드</p>	

B.1	사업장 관리 및 기술지도의 충실성(배점:300점)	
평가항목 B.1.1.3	평가기준 (배점 : 60)	평가결과
사업장 안전관련 기술자료 제공 및 교육지원	① 기술자료를 현장별 평균 1회 이하 제공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20
	② 기술자료를 현장별 평균 2~3회 제공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40
	③ 기술자료를 현장별 평균 4회 이상 제공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60
평가 취지	<p>○ 기술지도 사업장에서 위험공종 도래 및 공사 준공시까지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기술자료 제공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실시 상태 평가</p>	
주요 착안사항	<p>○ 기술자료의 범위 - 안전·보건과 관련된 자료 전체</p> <p>○ 교육지원 - 현장기술지원 후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등 현장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p>	
평가 방법	<p>○ 표어 및 포스터는 종류 및 제공횟수에 관계없이 1회로 평가</p> <p>○ 현장 당 지원한 기술자료 및 교육지원 회수를 종합하여 평가</p> <p>○ 검토대상 보고서는 지도요원별 5개 현장 파일을 샘플링 - 평균 제공 회수 = 전체 제공 회수 / 전체 기술지원 현장수 - 소수점은 첫째에서 반올림</p>	
증빙서류	<p>○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기술자료 공급계획, 기술자료 제공 실적 등</p>	

B.1	사업장 관리 및 기술지도의 충실성(배점:300점)	
평가항목 B.1.1.4	평가기준 (배점 : 100)	평가결과
위험성평가 인정(컨설팅)	가. 위험성평가 인정신청 사업장수	
	① 인정신청 사업장 수: 1개	<input type="checkbox"/> 20
	② 인정신청 사업장 수: 2개	<input type="checkbox"/> 35
	③ 인정신청 사업장 수: 3개 이상	<input type="checkbox"/> 50
	나. 인정 비율	
	① 지도사업장의 5% 이상이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한 위험성 평가 인정사업장일 경우	<input type="checkbox"/> 10
	② 지도사업장의 10% 이상이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한 위험성 평가 인정사업장일 경우	<input type="checkbox"/> 20
	③ 지도사업장의 30% 이상이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한 위험성 평가 인정사업장일 경우	<input type="checkbox"/> 35
④ 지도사업장의 50% 이상이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한 위험성 평가 인정사업장일 경우	<input type="checkbox"/> 50	
평가 취지	<p>○ 산업안전보건법 제 42조의2에 의거 평가기관의 기술지도 사업장 중 위험성 평가 인정신청 (공사금액 120억, 토목 150억 미만)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인정을 및 인정신청 사업장수로 평가</p>	
주요 착안사항	<p>○ 평가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RAS를 통해 신청한 사업장이 심사를 거쳐 인정된 사업장 비율</li> <li>- 평가산식</li> </ul> $\frac{\text{평가기간내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수}}{\text{지도사업장 중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 사업장수}} \times 100$ <p>※ 위험성평가 인정심사 사업장수 산정시 평가기간 이전 신청 사업장 대상 제외  ※ 위험성평가인정시스템(KRAS)을 통해 평가</p>	
평가 방법	<p>○ KRAS를 통해 위험성평가 인정심사 신청 사업장 및 신청사업장 중 인정심사를 거쳐 인정된 사업장 비율을 합산하여 평가</p>	
증빙서류	<p>○ 위험성평가인정시스템(KRAS)자료</p>	

## B.2 재해감소

B.2	재해감소(배점:200점)	취득점수	
평가항목 B.2.2.1	평가기준 (배점 : 200)		평가결과
중대재해 발생 빈도 수	① 계약건수 대비 발생건수가 2.0%이상	<input type="checkbox"/>	20
	② 계약건수 대비 발생건수가 1.0%이상 2.0% 미만	<input type="checkbox"/>	40
	③ 계약건수 대비 발생건수가 0.5%이상 1.0% 미만	<input type="checkbox"/>	80
	④ 계약건수 대비 발생건수가 0.3%이상 0.5% 미만	<input type="checkbox"/>	120
	⑤ 계약건수 대비 발생건수가 0.3% 미만	<input type="checkbox"/>	160
	⑥ 중대재해 미발생	<input type="checkbox"/>	200
평가취지			
○ 기술지도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발생방지를 위해 내실있는 기술지도 유도를 위한 평가			
주요 착안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대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사대상 중대재해</li> <li>○ 전년도 11.1월부터 금년도 10.30일까지 지도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발생빈도를 평가(발생일 기준 산재승인 통계)</li> <li>○ 계약건수는 평가대상 기간(1년간)에 계약한 계약사업장 수로 계약일을 기준으로 함</li> </ul>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대재해 발생빈도수(중대재해 발생 건수/지도 계약 현장수)*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li> </ul> </li> <li>○ 중대재해 발생 건수는 재해 발생일을 기준으로 산정(한개 현장에서 연속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발생 건수 마다 산정)</li> <li>○ 공단전산망과 기술지도 대상 현장을 비교하여 중대재해발생 건수 확인</li> </ul>			
증빙서류			

### B.3 만족도 및 우수사례

B.3	만족도 및 우수사례(배점:100점)	취득 점수	
평가항목 B.3.3.1	평가기준 (배점 : 50)		평가결과
지도사업장 만족도			
평 가 취 지			
○ 기술지도 사업장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여 기술지원 서비스향상을 위한 평가			
별첨1. 만족도 설문 조사결과표 참조			
설문항목		합산 점수	
1-(1) 현장 방문 시 사전 업무 준비		합산점수( )점÷10= 점	
1-(2) 현장에 적합한 기술지도 서비스 제공		합산점수( )점÷10= 점	
1-(3) 보건정보의 원활한 제공		합산점수( )점÷10= 점	
1-(4) 기술지도 요원의 친절도		합산점수( )점÷10= 점	
2 재해예방 기여도		합산점수( )점÷10= 점	
계		합계 총 점	
평가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수된 별첨2(만족도 설문조사표)를 기준으로 별첨1을 작성</li> <li>○ 설문서 조사대상은 각 기관별 최소 30개 현장을 표본으로 하여 설문지 송부하고 회수되는 설문지 중 임의로 선정된 10개를 평가(최소 10개 이상 평가)</li> <li>○ 종합 점수가 소수점이 나올 경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li> </ul>			
증빙 서류			
○ 만족도 설문 조사표			

<b>B.3</b>	<b>만족도 및 우수사례(배점:100점)</b>	
평가항목 B.3.3.2	평가기준 (배점 : 50)	평가결과
기술지도 우수사례	① 법 외적으로 기관이 실시한 재해예방 서비스가 1종류 이상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10
	② 법 외적으로 기관이 실시한 재해예방 서비스가 2종류 이상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20
	③ 법 외적으로 기관이 실시한 재해예방 서비스가 3종류 이상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30
	④ 법 외적으로 기관이 실시한 재해예방 서비스가 4종류 이상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40
	⑤ 법 외적으로 기관이 실시한 재해예방 서비스가 5종류 이상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50
평가 취지		
○ 법 외적으로 재해예방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도록 하기위함		
주요 착안사항		
○ 법 외적 재해예방 서비스 종류 - 가칭 건설안전봉사단(안전모 나누어 주기, 현수막 부착하기 등) - 지자체(공단) 및 민간 기관 주관 캠페인 참여 - 지자체 주관 국가안전대진단 참여 및 자문 - 안전문화 확산 차원의 기고, 전광판, SNS 등을 활용한 홍보 실적 - 기타 기술지도 사업(영업)과 무관한 안전 관련 사회 참여활동 등		
평가 방법		
○ 지도기관에서 수립한 실시 계획 및 결과를 처리한 문서를 확인 - 지도기관 대표 이사 명의의 신문 기고 또는 사회참여 활동 원칙 ○ 연간 법 외적 재해예방 서비스 실적으로 평가		
증빙서류		
○지도기관에서 재해예방 서비스와 관련하여 수립한 계획 및 결과 문서		

## B.4 기술지도 사업장의 중대재해 발생

B.4	기술지도 사업장의 중대재해 발생	취득점수	
평가항목 B.4.4.1	평가기준 (배점 : 최대 - 100점)		평가결과
기술지도 사업장의 중대재해 발생	① 중대재해 발생건수 _____건 × ( - 10점 )		_____ 점
평가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대재해 발생에 대하여 평가</li> </ul>		
주요 착안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평가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1년 이내(계약일 기준)에 기술지도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li> </ul> </li> <li>○ 중대재해 발생 후 기술지도계약은 제외</li> </ul>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평가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대재해 발생건수 별로 - 10점, 최대 - 100점으로 평가</li> </ul> </li> <li>○ 공단 전산망과 기술지도 사업장을 비교하여 중대재해 발생 현황 파악</li> <li>○ 중대재해 발생건수는 발생일을 기준으로 함</li> </ul>		
증빙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대재해 발생 증빙 자료</li> </ul>		

<b>B.4.</b>	<b>기술지도 사업장의 산재은폐</b>	
평가항목 B.4.4.2	평가기준 (배점 : 최대 - 100점)	평가결과
기술지도 사업장의 산재은폐	① 산재은폐 처벌건수 _____ 건 × ( - 10점 )	_____ 점
평 가 취 지	<p>○ 지도사업장의 산재은폐에 대하여 평가</p>	
주요 착안사항	<p>○ 산재은폐에 대한 평가는 최근 1년 이내에 기술지도 사업장에서 산재은폐로 처벌 받은 경우에 대해 평가</p> <p>○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을 통한 산재은폐 처벌건수 확인</p>	
평 가 방 법	<p>○ 산재은폐에 대한 평가는 산재은폐 처벌건수 별로 - 10점, 최대 - 100점으로 평가</p> <p>○ 산재은폐 사실 확인을 위해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협조 요청</p>	
증빙서류	<p>○ 고용노동부에서 처벌한 산재은폐 사업장 처벌 건수</p>	

B.4	재정기술지원사업 연계 및 불량 사업장 신고	
평가항목 B.4.4.3	평가기준 (배점 : 최대 +50점)	평가결과
재정기술지원사업 연계 및 불량 사업장 신고	① 재정기술지원사업수 또는 불량 사업장 신고건수 _____건 × ( +5점 )	_____ 점
평 가 취 지	○ 건설업 클린사업 확대를 위한 기술지도 실시 유도 및 불량사업장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한 평가	
주요 착안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정기술지원사업수는 기술지도 사업장과 건설업 클린사업 지원 사업장을 비교</li> <li>○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을 통한 불량사업장 신고건수 확인</li> <li>○ 기술지도기관에서 고용노동부로 신고한 신고 건수 확인</li> </ul>	
평 가 방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업 클린지원사업장과 지도기관 기술지도사업장을 비교하여 재정지원사업 연계 확인</li> <li>○ 재해발생 우려가 높은 불량사업장을 고용노동부에 조치 요청한 신고 건수</li> </ul>	
증빙서류	○ 관할 지청에 발송한 불량사업장 조치 요청 문서,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b>B.4</b>	<b>세미나 참석 및 전산입력 오류</b>	
평가항목 B.4.4.4	세미나 참석(명별 +5점, 최대 +50점) 및 전산입력 오류(건별 -5점, 최대 -50점)	평가결과
<b>세미나 참석 및 전산입력 오류</b>	① 세미나(학회 등) 참석 인원수 _____명 × ( + 5점 ) ② 입력오류 건수 _____건 × ( - 5점 )	_____ 점
평가 취지	○ 기술지도 요원들이 각종 기술세미나(학회등)에 참석하는 등 기술력 향상을 통해 재해예방업무에 기여하기 위함 ○ 기술지도 실시 사업장에 대한 정확한 전산 입력을 유도하여 지도기관 평가 내실화 추진	
주요 착안사항	○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사업장명, 현장명 등 사업장 기본정보 전산입력 실태 파악 ○ 국가기술자격증 관련 신규보수 교육 및 직무유지를 위한 법정 교육은 제외	
평가 방법	○ 기술지도 명단과 공단 전산시스템 명단을 비교하여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사업장명, 현장명 등 사업장 기본정보 전산입력 관리상태 평가 ○ 기술세미나, 학회 등에 참석한 참석자 수에 의한 배점 - 참석확인서 또는 참석 증빙 자료 제시 ※ 기술세미나 및 학회 참석은 건설·안전분야에 한함	
증빙 서류	○기술지도기관 전산입력(K2B)자료, 기술세미나(학회) 참석 증빙 서류	